

도시건설사업소 종합감사
[2016. 4. 18 ~ 4. 2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사담당관

주의요구

제 목 공용차량 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도시건설사업소 ○○○○과에서는 녹지관리, 가로수 유지관리, ○○○○를 위하여 관용차를 보유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 관용차량 규칙 제26조에 의하면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정수관리대장,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각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하거나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29조(근무지침) 규정에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하고, 운전원은 매일 차량운행일지의 기록 및 차량상태 등을 1일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상 유무에 따라 지체 없이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용 차량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을 운행할 시에는 운행목적, 경유지 및 목적지, 운행시간, 운행거리, 주유사항 등을 기록한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공용차량(××무××××, ××서 ××××, ××무 ××××)을 운행하면서 20××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녹지관리(××무××××) 및 가로 유지관리(××서 ××××) 차량은 차량운행일지를, ○○관리(××무 ××××)차량은 유류수불부 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등 공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보유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부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의요구

제 목 어린이공원 유소년 축구장 위탁관리 부적정

관계부서 ○○○○과

내 용

도시건설사업소 ○○○○과에서는 「○○○ 어린이공원 유소년축구장」 및 「○○ 근린공원 유소년축구장」을 관리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위탁)에 의하면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부서가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동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 등에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거나 기존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제3조에 의거 위탁할 경우 「별표 1」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에 해당 유소년축구장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이를 근거로 위·수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 어린이공원 유소년축구장」 및 「○○ 근린공원 유소년축구장」을 △△△○○○ 및 ◇◇◇○○○와 위·수탁을 체결하면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한 위·수탁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한 사실이 없고 또한,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제2조(정의)와 관련하여 「별표1」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에 해당 유소년축구장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제3조(위탁 관리)에 근거하여 위·수탁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위수탁계약 체결시 조례나 개별법령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과, ○○○○과
내 용

○○○○과, ○○과, ○○○○과에서는 도시기반시설 구축, 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각종 시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시설부대비를 사용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조와 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경비·물품검수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설비(401-01)는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기타 소규모 용역경비에 사용하며, 시설부대비(401-03)은 공공재산 취득 및 공사 추진상 시공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수수료, 임차료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시설부대비는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며,

다만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시설비로 집행하여야 할 등기등록비 #,### 천원을 시설부대비에서 지출하였으며, ○○과와 ○○○○과에서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여야 할 도서구입비를 시설부대비로 지출하였고, 또한 ○○과에서는 시설부대비로 #명에게 방한장구(방한복 및 방한장갑 등)를 지급하였으나, 지급대상이 명시되지 않는 등 시설부대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 ○○○○과장은

시설부대비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의요구

제 목 세출예산(유류구입) 연말 몰아쓰기 집행
관계부서 ○○○○과
내 용

도시건설사업소 ○○○○과에서는 공원순찰 및 녹지시설 관리를 위하여 관용차 및 오토바이를 보유·사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의하면 세출예산은 연초에 수립한 월별집행계획을 준수하여 세출예산이 남았음을 이유로 연말에 무리한 집행잔액을 집행하는 방법 등으로 소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회계 및 관련 업무담당자는 재정의 건전성 및 예산집행의 균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공원순찰 및 녹지시설물 관리에 따른 공용차 및 오토바이 유류를 구입하면서 연간 공용차 및 오토바이 운행에 필요한 유류량만을 구입하여야 함에도 회계연도 말 유류관련 예산이 남았음을 이유로 20××.××.××.자로 ###리터(###천원)의 유류를 일괄하여 구입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연말에 몰아쓰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균등화를 도모하는 등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비 집행잔액 임의사용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비목별 세부집행지침에 시설비의 낙찰차액은 동일편성목내에서 토지매입비(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편성목내의 시설비 낙찰차액을 이외의 신규사업으로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출예산을 집행할시에는 관련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여 세출예산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시설비의 낙찰차액은 동일 편성목 내의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 감리비로는 사용할수 있으나 신규 사업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시설비의 집행잔액은 신규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 ○○○ 홍보 조형물 제작 설치”건 #,###천원을 ○○○○○○ (세부사업)의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임의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 ① 시설비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시책업무를 위한 제경비로서, 회계 관계 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자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격려가 필요한 경우로서, 규정된 집행기준에 의하여만 집행하고 집행기준을 지나치게 확대해석 하거나 유추 해석하여 집행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책 또는 지역홍보, 시책업무를 위한 각종 회의, 행사시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시책 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관계자, 내방객 제공 음료구입 등 총 ##건 #,###천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및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준수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서(물품구매)작성 소홀 및 검수절차 미이행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제121조(계약의 체결) 및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에 의하면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계약서작성을 생략할 경우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 서식 또는 별지 제50호 서식을 사용하고, 중앙부분에 있는 “이면기재사항을 승낙함” 쪽에는 반드시 승낙

사항을 기재한 후 계약대상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승낙사항을 날인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종 계약시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금액, 준공(납품)기한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대가지급할 경우 물품 구매 검사(수)조서[지출결의서 납품, 준공(검수)날인]를 작성한 후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공사(용역) 및 물품 구매계약시 금액, 준공(납품)기한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공사나 물품 준공(검수)시 준공(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계약(총 ##건 ##,###천원)시 계약에 필요한 준공(납품)기한, 지체상금 등 이면 승낙사항을 미기재하는 등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하였으며, 대가지급시 준공(검수)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준공(검사)일자를 누락하는 등 계약서 작성 및 검수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계약서 작성 및 준공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사무관리비 목적외 사용 및 예산초과집행

관 계 부 서 ○○과, ○○○○과,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III. 비목별 세부 집행기준에 따라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로서 사무관리비(201-01)는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시 집행하고,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에 내용연수가 1년 이상, 취득단가 10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한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에 회계처리절차는 물품 및 용역 등 집행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결재(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경비 교부는 예산집행품의 생략)를 득한후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출예산을 집행할시에는 관련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여 세출예산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회계처리절차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에 대하여 품의를 득한후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과 및 ○○○○과에서는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없는데도 세출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상품권 및 ○○○○ 보관함을 사무관리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과에서는 예산집행은 예산의 범위내 품의를 낸 후 집행하여야 함에도 20××년도에서 20××년도까지 ○○○집행시 일괄 연품의만 낸 후 수시로 결재를 하였고, 품의금액을 초과하여 ○○○를 지출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주의】

① 예산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관련회계규정을 준수
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신용카드 구매(100만원초과물품)시 구입과 지출결의서 미사용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48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

식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4장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카드 사용요령절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1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상기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동규칙 별표 제45호서식)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제121조 제3항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 서식 또는 별지 제50호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그 밖의 사항)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 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제48호서식)를 사용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100만원이상의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시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간이계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사무실 블라인드 교체 외 #건 #,###천원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면서 구입과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는 등 관련규정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신용카드로 100만원 초과 물품구매시 관련규정에 따라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비목별 세부집행 지침에 의하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를 위한 경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고,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 양양 경비와 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 등 과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시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1〕 3호 다목(지역 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자원봉사자·단체·센터의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농·어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자원 봉사자·단체·센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장애인·독거노인, 생활 보호대상자 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개인·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또는 식사제공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는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 ⇒ 가격 비교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 ⇒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하여야 하고,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집행품의)에 추정금액 별로 본청, 제1관서, 기타관서 등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직무수행 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경비 교부는 예산집행 품의 생략)를 득한 후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현업(현장)부서 근무자, 소속 상근직원에게 대한 격려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하여야 했고, 업무추진비는 사전품의(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금액 등을 명시)에 낸 후 예산을 집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를 위한 경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
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고 부서운영 공동 경비로써 전
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회복지무요원 소집해제자
격려품 구입, 민원자원봉사자 급식제공 등으로 총 #건 ###천원을 집행
한 사실이 있으며,

○○과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사유 발생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명시하여 사전품의를 낸 후 집행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20××년에서 20××년도까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연초에 일괄품의를 낸 후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명시하지 않고 지출적요를 “업무추진비 집행”으로만 기재하여 총##회
#,###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소속상근직원에게 대한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
여야 하고,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소속직원(△△△) 승진 축하
기념으로 화분구입 #건 ##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은

업무추진비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정요구

제 목 법인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내 용

○○○○과, ○○○○과, ○○○○과에서는 집행품의에 따른 원인행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결제일까지 해당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89조(출납원)에 의하여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IV.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거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하고,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다시 지급하되,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경리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은 신용카드 사용 지출액과 실제 지출액을 수시대조하여 오차에 대해 원인을 파악 후 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신용카드 사용 대조 및 통장관리를 소홀히 하여 실제 통장잔액과 향후 대금 집행액의 차이가 ○○○○과는 ##,###원, ○○○○과는 ###,###원, ○○○○과는 ##,###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등 법인 신용카드 계좌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 ○○○○과장은

【시정】

카드결제계좌 차액(○○○○과 ##,###원 ○○○○과 ###,###원 ○○○○과 81,605원)을 세입처리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의요구

제 목 전기요금 관리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녹지시설, 포항운하, 근린공원의 관리를 위해 매달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지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은 예산의 집행방법 개선 등에 자발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공공요금의 조회·납부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 운영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에서는 전기요금 수납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력요금의 1% (1,000원 한도, 익월요금에 할인금액 반영)를 할인해주는 자동이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요금이 할인되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20××년부터 감사일현재까지 총 ###,###천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면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였다면, #,###천원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예산절감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의요구

제 목 피복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관계부서 ○○과, ○○○○과
내 용

○○과, ○○○○과에서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현장활동에 필요한 작업복을 매년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을 지출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하여 사전집행품의를 받은 후 회계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피복비 집행시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하고,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게 사무관리비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현업부서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또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20××.××.××.일 무기계약직에게 작업복을 지급하면서 해당 구입내용에 대한 품의없이 년초에 작성한 급여 지급 품의 내역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작업복이라고 하기에는 부적합한 고가브랜드의 등산용품을 1인당 ###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사무관리비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피복을 집행할 수 없음에도, 20××.××.××.일과 20××.××.××.일에 공가선로정비 공구 및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품목에 안전화와 작업복을 포함시켜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으며,

○○○○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 피복 구입’등 #건의 #,###천원을 집행하면서, 구매 물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지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조서(수령증)를 첨부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작업복이라고 하기에는 부적합한 고가브랜드의 등산용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무복 구입시 예산 및 근무여건 등 기준을 준수하는 등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정요구

제 목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관계부서 ○○○○과, ○○○○과
내 용

○○○○과, ○○○○과에서는 업무 추진 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청구액과 포인트 발생액을 해당 카드사로부터 매월 통보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IV.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적립금은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과는 20××.××.××.부터 적립된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조치하지 않았으며, ○○○○과에서는 20##.##.##.조직개편전 ○○○○사업소로 적립되어 있던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원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

【시정】

신용카드 포인트 ##,###천원을 세입처리(○○○○과)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정요구

제 목 임시운행 번호판 관리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일시 운행하려는 경우 임시운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운행 허가 업무를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 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하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르면 시·도시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제27조 제4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하며,

법 제84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하면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는 3만원,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허가를 받은 자에게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 받아야 하며, 임시운행기간을 경과하여 반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했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 되었음에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 #건, ##,###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과태료 미부과한 임시운행번호판 미반납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의요구

제 목 건설기계 주기장 관리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건설기계 주기장시설 보유 확인 및 주기장시설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는 건설기계사업(대여업, 매매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제63조에 규정에 따른 [별표14]와 [별표16]에서는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기장은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진입로는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또한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한 주기장 관리 실태를 샘플링 (북구 ○○면 ○○리 #####번지 외 #필지-샘플링)확인해 본 결과, 서류에 등록된 주기장은 당초 목적과 달리 일부 전(田) 사용되고 있었으며, 일부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수풀이 우거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으로 인해 주기장에 주기하여야 할 ###대의 건설기계가 주택가 또는 공터,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택가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건설기계 사업자가 주기장에 실제적으로 건설기계가 주기하고 있는지 매년 주기적으로 자체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행정상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주기장 등록기준 및 실제 주기장 이용 실태 등을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등록된 주기장에 대한 보유시설 확인서류만 점검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불법주기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기장에 대하여 주기장 등록기준 및 실제 주기장 이용실태를 점검하여 위법사항 발생시 조치하는 등 주기장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의요구

제 목 가로수 손괴자 부담금 납입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가로수를 손괴한 자에게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제25조에 의하면 시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녹지시설 또는 가로수를 손괴한 자에게는 [별표] 부과기준에 따라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63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서는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가로수를 손괴한 자에게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세외수입 처리에 의한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하고, 부담금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는 세외수입 징수금과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도 ○○○○과에서 가로수 손괴자 부담금의 징수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와 혼합하여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좌에 송금된 부담금을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지 않고 최단2일에서 최장32일까지 지연하여 납입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가로수 손괴자 부담금 납입시 세외수입 처리에 의한 방법으로 징수하고 납입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의요구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공원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20××.××.×× 일반입찰 경쟁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하였다.

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임대 사전 공고 누락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제4조에서는 포항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시설관리공단의 장은 공공시설¹⁾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르면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20세 이상 장애인, 만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신체 등의 장애로 인하여 판매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과에서는 같은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받아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허가될 수 있도록 시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를 하여야 했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공원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임대 업무를 수행하면서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에 따른 사전 공고를 시행하지 않아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일반경쟁 입찰 예정가격 작성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서는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하고,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공유재산 업무편람」에서는 재산가격 평가를 감정평가를 적용하는 경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

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입찰에 부치는 사용료 예정가격 산정에 소요된 감정평가 비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부지평가의 경우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하였다.

1. 그런데도 ○○○○과에서 재산가격 평가에 소요된 감정평가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경계가 불명확한 부지에 대해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산정되는 ##㎡ 적용하지 않고 임의 면적 ##㎡를 적용하여 입찰 예정가격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감정평가업자에게 지급된 감정평가 수수료 ###,###원과 부지면적 ##㎡에 대한 부지평가액 ##,###,###원이 과소평가되는 결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 ① 앞으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허가시 관련조례에 의거 사전공고 절차사항 등 관련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시정요구

제 목 ○○ ○○테마거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 ○○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에 따라 발주자 및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인 경우 건설업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품질관리자배치 등)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품질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과다 계상된 관급자재대(근거없이 계상된 관급자재대)와 상수도관 이설 등 지하매설물 이설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 감액 요인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도급자가 제출한 품질관리(시험)계획서를 공사감독자가 검토하여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품질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승인 없이 공사를 시공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과다 계상된 관급자재대(근거없이 계상된 관급자재대)와 ○○○○관 이설 등 지하매설물 이설비 ###,###천원을 감액하고,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검토결과를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시정요구

제 목 ○○ ○○리 교량개체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 ○○ ○○리 교량개체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에 따라 발주자 및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인 경우 건설업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품질관리자배치 등)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품질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 ○○리 교량개체공사를 시행하면서 사토운반 수량 산정 오류(토사, #,###m³ → #,###m³, 감#,###m³)로 공사비 ##,###천 원(제경비 포함) 정도 감액 요인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도급자가 제출한 품질관리(시험)계획서를 공사감독자가 검토하여 승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품질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승인 없이 공사를 시공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 ○○리 교량개체공사의 사토운반 수량 산정 오류로 과다계상된 공사비 ##,###천원을 감액하고,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검토 결과를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시정요구

제 목 ○○ ○○#리 도로 확포장공사 방호울타리 등급 적용 부적정
관계부서 ○○과
내 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 국토교통부, 2014. 2)에 따라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형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부수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시설이다.

방호울타리의 종별은 설치 위치 및 기능에 따라 노측용, 분리대용, 보도용 및 교량용으로 나누며, 시설물의 강도에 따라서는 가드레일 등 보(beam)형 방호울타리, 케이블(cable)형 방호울타리인 연성 방호울타리와 강성(콘크리트) 방호울타리로 구분된다.

방호울타리 형식 선정에 있어서는 성능, 경제성, 주행상의 안전감, 시선 유도, 전망, 쾌적성, 주위 도로 환경과의 조화, 시공 조건, 분리대의 폭, 유지보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식을 선정한다.

방호울타리의 등급은 시설물 사용 목적과 설치 구간의 도로 및 교통 조건, 지형 조건 및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조건을 정하고 이에 부합한 시설물이 되도록 적용한다. 방호울타리의 등급은 시설물의

강도 성능을 기준으로 9등급으로 구분한다. 기본적으로 SB2, SB3, SB3-B를 기본등급으로 하고, 교량구간 및 추락 혹은 차로 이탈시 심각한 사고가 예상되는 위험구간에서의 사고는 일반구간의 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 피해의 정도가 크므로 윗 단계(SB4, SB5, SB5-B)를 적용한다. 또한 설계 속도가 높은 도로의 교량에는 사고 시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강도가 큰 방호울타리의 설치를 고려한다.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때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수행을 기본으로 하여, 사고 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9가지 등급의 적용 검토대상 구간의 예를 들면 SB1은 저속구간(60km/시 미만)에서, SB2는 설계속도(60, 70, 80km/시)의 기본구간에 SB3는 설계속도(90, 100km/시)의 기본구간에 SB3-B는 설계속도(110, 120km/시 이상)의 기본구간에 적용하는 등급이다. SB4, SB5, SB5-B는 각각의 설계속도에 대해 위험구간에 적용한다. SB6, SB7은 고속구간에서 위험도가 매우 높은 특수 구간이나 특수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구간 등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적합한 시설이 개발될 때까지는 적용 가능한 최대 등급을 적용한다. 각 구간의 특수 사정에 따라서는 한 단계 위의 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위험구간(위험도가 큰 구간)"은 중앙분리대, 교량구간, 도로 옆이 절벽인 구간 (기울기가 1:1보다 급하고 높이가 4m이상), 도로가 수심 2m 이상 수면에 인접한 수중추락위험 구간, 차량속도가 높아지는 내리막 긴 직선 이후 급커브 구간 등의 구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 ○○#리 리도###호선은 설계속도 50km/시 도로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에 따라 SB1 또는 SB2등급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도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에도 설계속도 60km/시 일반구간 중 위험구간에 적용하는 SB4 등급의 방호울타리(가드레일)를 설계내역에 반영하여 공사비 #,###천원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신광 ○○#리 도로확포장공사의 방호울타리(가드레일)의 등급을 시설 기준에 맞도록 조정하고 과다하게 계상된 방호울타리(가드레일) 공사비 #,###천원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주 의 요 구

제 목 ○○○ 군립공원 환경정비공사 시행 부적정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천원의 사업비로 ○○○ 군립공원 내 불법 가설건조물 철거를 위한 환경정비공사를 시행하였다.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에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1조 제1항에 ○○○○청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대로 두면 공익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이 대집행하거나 ○○○○청의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대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년 ○○○○사업소에서 ○○○군립공원내 포항시 북구 ○○

○ ○○리 ###번지 외 #필지 상의 불법 가설건조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기타조립식 가설건조물)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위반으로 ○○○○사업소-★★★★(20##.##.##.)호 및 ○○○○사업소-★★★★(20##.##.##.)호에 의거 소유자에게 자진철거토록 요청하였으며, ○○○○사업소-★★★★(20##.##.##.)호에 의거 경찰서에 고발의뢰한 불법 가설건조물에 대하여,

○○○○과에서는 자연공원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법 가설건조물 철거를 위해 ○○○ 군립공원 환경정비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① 앞으로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시정요구

제 목 ○○ ○○○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 ○○ ○○○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에 따라 발주자 및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인 경우 건설업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품질관리자배치 등)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품질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동해 ○○○ 동문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용 가설창고를 설치하지 않았고, 교통안전시설 사용기간을 실제 소요되는 공사기간에 맞도록 ##개월에서 #개월로 조정하고 지하매설물 이설비를 공사비에서 제외하여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 감액 요인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도급자가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착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독려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중에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 ○○○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미 설치된 공사용 가설창고, 교통안전시설 사용기간(##개월에서 #개월로 조정) 조정 및 지하매설물 이설비 등의 공사비 #,###천원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시정요구

제 목 ○○동 도시계획도로(중★-★★★)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 ○○동 도시계획도로(중★-★★★) 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제30조의2(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별표6의5 2항 가목) 규정에 의하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 전일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에 따라 발주자 및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인 경우 건설업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품질관리자배치 등)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품질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동 도시계획도로(중★-★★★) 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의 LU형 측구를 철거하고 파형강관(D450)을 매설하도록 설계하여 발주하였으나 LU형 측구의 기존 구조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재사용이 가능하여 존치토록 함으로써 파형강관 매설 공사비를 ##,###천원(제 경비 포함) 정도 감액 요인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착공 전일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일이 경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도급자가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착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독려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중에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동 도시계획도로(중★-★★★) 개설공사에 대하여 기존의 LU형 측
구 재사용에 따른 파형강관 매설 등의 공사비 ##,###천원을 감액하고, 품질
시험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시정요구

제 목 도로공사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반영 부적정

관계부서 ○○과

내 용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2012.3.1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8절에 의하면 보험료 적용은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건설공사에만 적용하며,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보험료보다 적게 반영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시정 조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읍 △△리 △△타운 앞 인도설치공사 및 ○○ ○○리(리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변경을 통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시정요구

제 목 ○○ ○○지 ○○공원 정비보완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 ○○ ○○지 ○○공원 정비보완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며,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발주자는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규정에 의거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2의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 ○○지 ○○공원 정비보완공사를 시행하면서 가도설치용 톤마대 쌓기를 시공하지 않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20××.××.××. #회 기성검사를 실시하면서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중지된 날짜에 안전관리자 인

건비(#일)를 지급하는 등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 감액 요인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 ○○지 공원 정비보완공사의 가도설치용 톤마대 쌓기 미 시공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 발급,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중지된 날짜에 지급한 안전관리자 인건비(#일) 등의 공사비 ##,###천원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시정요구

제 목 ○○○ 군립공원 ○○○ ○○○○ 교체공사 공사원가계산 부적정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 ○○○ 군립공원 ○○○ ○○○○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8절에 의하면 보험료 적용은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건설공사에만 적용하며,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군립공원 ○○○ ○○○○ 교체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임에도 퇴직공제부금비 #,###천원을

공사원가계산서 상에 반영하였으며, 계약상대자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군립공원 ○○○ ○○○○ 교체공사의 과다 계상된 퇴직공제부금비 #,###천원을 감액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시정요구

제 목 건축공사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지방시 기준, 현지어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6호 2016.1.1)제19조(설계변경 등)1항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의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 복지회관 건립공사를 20××년 (주)△△건설과 계약(20××.××.××)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변의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는 토류벽의 ★-파일을 ★★.★M간격으로 설치(##본)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파일을 ★.★M간격으로 설치(##본)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토류벽에 설치하는 토류판의 수량이 산정 오류로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음에도 설계내역서를 확인하지 못하여 수량 오류와 H-파일 미설치로 인한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 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 복지회관 건립공사의 미 설치된 ★-파일 및 과다 계상된 토류판에 대하여 공사비 ##,###천원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주 의 요 구

제 목 기술용역 손해배상보험료 산정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지방서 기준, 현지어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 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기술용역 비용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동 ○○○ 복지회관 감리용역 외 #건과 ○○마을 ○○○○ 설계용역 외 #건의 설계내역서에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기술용역 비용에 계상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기술용역 손해보험료 산정시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